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9년 11월 1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11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11월 26일

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평생교육원장 유 익 수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립도서관 사용허가 제한 규정을 추가 신설하며 강당 사용 시간을 연장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대하고, 불명확한 사용료 납부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도서관 이용시 정치·종교관련 행사의 사용허가 제한 규정 신설(안 제3조)
 - 특정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 관련 교육, 강연, 모임
 - 종교단체의 모임 및 강연

- 도서관 강당 사용시간 연장 및 사용료 납부기한 규정(안 제4조제1항)
 - 현행 : 사용시간은 09:00부터 18:00까지로 한다.
 - 개정 : 사용시간은 09:00부터 18:00까지로 한다.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·조정 할 수 있다.
 - 사용료 납부기한을 사용일 전일까지로 규정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도서관법」,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정 은

- 본 『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
 - 시립도서관 사용허가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, 이용자 편의를 위해 강당 사용시간 연장 및 사용료 납부기한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·정비하고자 하는 안임.
- 검토 결과,
 - 시립도서관은 일반적인 행사를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 교육 향상과 문화 발전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시설로, 도서관이 본래 설치목적에서 벗어나 정치적·종교적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- 그밖에 강당 사용시간 연장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시민 편의 증진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용료 납부 기한을 명확히 하여 도서관 관리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